

# 10. 附 錄

## 부산직할시사하구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사하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 조 중 “시교육위원회 교육감”을 “부산직할시 교육청 교육감”으로 한다.

제 5 조 중 “통장 정수의 10% 이내”를 “통장 정수의 15% 이내”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사하구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고용직, 임시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 3 조 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 회계년도 말로부터 1년이 경과한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  
: 징수액의 100분의 5

제 4 조를 삭제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산직할시사하구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 사하구 포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 조(포상대장) 중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를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로 한다.

제 3 조(포상권자)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 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하 “포상권자”라 한다)이 행한다. 다만, 타기관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제 4 조(포상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런 구민상, 질서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되, 자랑스런 구민상은 효행 선행상, 교육문화상으로 세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 5 조의2를 제6조로, 제6조를 제8조로, 제7조를 제9조로, 제8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자랑스런 구민상) 자랑스런 구민상은 3년 이상 부산직할시 사하구내에 거주한 자로서 별지 4호의 선정 기준에 의거 구정발전, 사회복지증진, 사회도의 양양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구민에게 수여한다.

제 9 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포상방법과 부상및 특전)

-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
- ② 제1항의 표창장은 상금, 상패, 기념 휘장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표창장 용지 및 기념 휘장의 규격은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 ③ 제7조에 의한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2.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첨
  3.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양양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6.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 개최시 귀빈 예우 초청

제10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포상절차 등)

- 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
    1. 구 관내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장 및 정부나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장
    2. 시·군·구청장, 동장
    3. 20인 이상의 구민(연서시)
  -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일로부터 4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6호 서식)

2. 수상 후보자 신상 명세서(별지 제7호 서식)

3. 수상 후보자 주민등록등본 및 사진(반명함판) 각 2매

③ 포상권자는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구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는 제13조에 규정된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심의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를 제16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 ①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자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구에 자랑스런 구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총무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대학 총·학장이 추천하는 대학교수 2인

2. 구 관내 정부기관(교육, 경찰, 세무)의 장이 추천하는 과장급이상 간부1인

3. 사하구 관내 각급 학교장 5인

4. 지역원로 및 유지 7인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해년도 자랑스런 구민상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11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4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자랑스런 구민상은 매년 시민의 날 기념 구민체육대회시 시상하되 시상인원은 2개 부문으로 한다.

④ 제6조에 의한 질서상은 연 4회 매분기 의월에 시상하되, 인원은 1회에 본상 1명, 장려상 2명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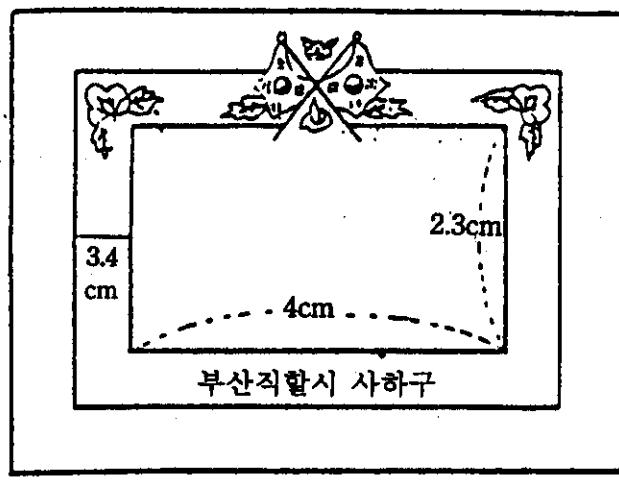
제12조를 제15조로, 제14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7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의"를 "별지 제8호 서식의"로 하고, 제15조를 제18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포상용 용지 규격



[별표 2]

### 기념휘장 규격 및 제작

본국인입상패  
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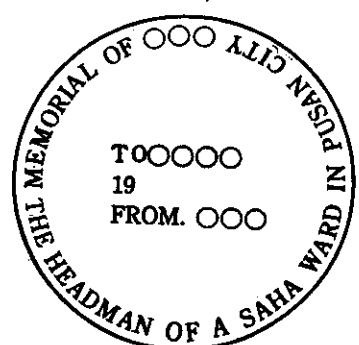
외국인상패  
전면



뒷면



뒷면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표 창 장

주소또는소속

직 성명

(표 창 문)

년 월 일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감 사 장

주소또는소속

직 성명

(감 사 문)

년 월 일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상 장

주소또는소속

직 성명

(상 문)

년 월 일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직인)

## 자랑스런 구민상 선정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시상부문	기준
효행선행상	<p>개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불우 이웃을 위해 다년간 헌신 봉사하고 재산을 사회에 회사하신 분</li><li>○ 경제적으로 손실을 감내하면서 비영리법인등을 다년간 운영 해 오신 분</li><li>○ 의로운 일을 해내고 부모를 극진히 봉양하고 있는 분</li><li>○ 노부모 봉양 및 불치병 간호에 열파 성을 다해 주위의 칭송이 자자한 분</li><li>○ 기타 효행과 선행에 있어 타 주민의 귀감이 되는 구민</li></ul>
교육문화상	<p>교육 문화 발전과 국민 정신 함양을 위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후세 교육과 선진 교육 추구에 열파 성을 다해 헌신하므로써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는 분</li><li>○ 내고장 전통 문화 발굴, 계승 등 향토 명예를 빛내는데 기여한 공이 현저한 분</li><li>○ 기타 교육 문화를 통하여 사회정의와 도의양양에 현저히 기여한 분</li><li>○ 기타 타의 귀감이 되는 구민</li></ul>

# 공적조서

(별지 제5호 서식)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상훈사무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①성명								한자 원명							
②주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③군번(군인의 경우)							
④본적 (국적)															
⑤주소															
⑥직업			⑦소속												
⑧직위				⑨등급(직급·계급)					⑩근무기간(수송기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				⑫공적분야코드					-						
⑬추천훈격								⑭추천순위							
조사자															
⑮소속								⑯직위							
⑰직급								⑱성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직인						

## 주요 학력 및 경력

⑯년 월 일	⑰이 력	⑯년 월 일	⑰이 력

###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㉑년 월 일	㉒내 용	㉓년 월 일	㉔내 용

### ㉕공적사항

→ 공적조서(을)지 작성( )

## 자랑스런 구민상 수상후보자 추천서

추천구분									
성명	한글		성별		사진				
	한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거주년수	19	.	.	—	19	.	.	(년)	
위 사람을 19 년도 사하구 자랑스런 구민상 부문 수상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19 년 월 일									
추천자 대표 성명 : (인)									
주소 :									
(주민연명시 연명자 첨부)									
사하구청장 귀하									
추천사유 (공적내용 별도 첨부)									

## 수상후보자 신상명세서

(별지 제7호 서식)

추천구분			추천자			
성명	( )		생년월일			
학력			성별			
주소			전화번호			
현근무처			직위			
거주기간	19 . . . - 19 . . . 현(년개월)					
가족사항	관계	성명	연령	관계	성명	연령
수상경력						
공적사항						

(별지 제8호 서식)

## 포상대장

호수	포상 년월일	포상 종별	포상 기관	피보상자				포상을 하게된 공적개요	기념품 또는 부상	비고
				직위또는 직명	소속 또는주소	성별	성명			

(포상 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